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주류용기등검정제도를간소화하여주류등의제조자가제조·저장에사용하는용기를신고하도록하고주류면허신청및변경신고시주류용기신고를한것으로보며,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하고용기를사용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기기 등의 검정)”을 “(제조·저장 용기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밀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를 “밀술등제조자”로,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를 “제조·저장에 사용하는”으로, “기계 등을”을 “용기를”로,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를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용기신고”라 한다)하여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용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기구 및 용기에 번호·용량과 그 밖에”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에 식별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계·기구 및 용기 검정”을 “용기 신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위반행위 중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또는”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기 등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용기의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기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 제조자 또는 <u>밀술등제조자나 주 류판매업자</u> 는 법 제28조에 따라 <u>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 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u> 해당 <u>기계 등을</u> 사용하기 전에 관할 <u>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u>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제조·저장 용기의 신고) ① ----- <u>밀술등제조자</u> ----- ----- <u>제조·저장에 사용하는</u> ----- ----- --- 용기를 ----- --- <u>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u> <u>“용기신고”라 한다)하여야</u> --- ---.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u>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제31조</u> <u>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용기</u> <u>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u>검 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기구</u> <u>및 용기에 번호·용량과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u> 다.	② ----- <u>신</u> <u>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에</u> <u>식별을 위해</u> ----- ----- --.
③ 제1항에 <u>따른 기계·기구 및</u> <u>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u> 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 <u>따른 용기 신고</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락처	(044) 215 - 4333